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신청 기간 연장〉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2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8.
3. 회부연월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사·순직한 진급 대상자 확인이 누락된 대상자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

- 현행 「군인사법」 제30조제1항¹⁾은 전사·순직자에 대하여 사후(死後)에 추서(追叙)²⁾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³⁾(현재는 동 시행령을 법 제30조의2에 이관하여 규정)⁴⁾는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1) 「군인사법」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추서(追叙) : 죽은 후에 관작(官爵)을 내리거나 품계를 놓여 줄을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3)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51호)

제43조의2(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 3. 29.]

4)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 삭제 <2020. 8. 4.>

「군인사법」 제30조의2(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전사·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을 기준으로 다시 추서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급예정자에 대한 2계급 추서진급을 허용하고 있음.⁵⁾

[舊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現 군인사법 제30조의2)에 따른
추서진급결과 비교(예시)]

구 분	전사 당시 계급	추서진급된 계급
일반 전사·순직자	중사	상사
	하사	중사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진급예정자	하사 (중사 진급예정자)	상사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급예정자	하사 (중사 진급예정자)	중사

□ 다만, 위 시행령은 부칙을 통해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⁶⁾ 진급예정자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⁷⁾

5) 동 규정 신설 이전에는 진급예정일 전에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진급예정계급이 아닌 진급 전 계급에서 1계급 추서진급하였는데, 이 경우 진급예정자의 사망이 확인된 시기에 따라 진급되는 계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즉 동일한 진급예정자라 하더라도, 진급예정일 전에 사망이 확인되면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1단계 추서진급하고, 진급예정일 이후에 사망이 확인되면 진급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아 진급한 계급에서 다시 1단계 추서진급하게 되어 동일한 진급예정자라 하더라도 사망 확인 일자에 따라 최종 진급된 계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예)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당시 중사 진급예정자였던故 임○○ 중사(사망 당시 하사)는 진급예정일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시신이 발견되어 중사로 추서진급하였으나, 상사 진급예정자였던故 김○○·문○○ 원사(사망 당시 중사)는 진급예정일인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원사로 추서진급하였음.

6) 「군인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751호, 2011.3.29.)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사·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7)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천안함 폭침 전사자故 임○○ 중사(폭침 당시 중사 진급예정자)가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하여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8005호, '17.7.14. 김성찬의원 대표발의)에서 법률안의 제안이유로 거론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법령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 기간('01. 9. 1. ~ '11. 3. 28.)에 해당하는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현행법 제정 당시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사망하여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7월 23일까지 진급신청을 하여야 했음⁸⁾.

다만,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01. 9. 1. ~ '11. 3.28.)기간 동안 전사·순직하여

특별진급 신청을 완료한 진급예정자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군·해병	공 군
인 원	35	22	3	10
비 고		순직 22	전사 1, 순직 2	순직 10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된 순직자]

구 분	계 급	군 번	성 명	사망일	순직유형	순직결정일
육군	중위(진)	01-12770	전○○	2001.12.02.	순직Ⅲ형 ⁹⁾	2017.05.02.
육군	중위(진)	08-13504	김○○	2009.02.07.	순직Ⅲ형	2018.10.26.

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 따라서 개정안은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순직자 유가족의 신청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사·순직자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국방부의 행정적 미비로 인해 진급신청 기회를 상실한 유족에 대한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전사·순직자 유가족의 신청여건 보장 차원 및 전사·순직자에 대한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